2017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2016. 1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1

1. 배 경 ····· 1
2. 경 과 ····· 1
3. 목 적 ····· 2
4. 내 용 ····· 2
5. 사업체계 ····· 3
6.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 4
7. 법적 근거 ····· 5

●제2장 취학아동 학부모 역할 6

1. 아동의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 확인 ····· 6
2.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완료 ····· 7

●제3장 접종기관 역할 8

1.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 8
2. 전산 미등록된 접종기록 등록 ····· 9

●제4장 초등학교 역할 10

1. 취학아동 학부모에게 홍보 ····· 10
2.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10

●제5장 시·군·구 역할 14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발부 ····· 14
2. 홍보 및 교육 ····· 14
3.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 14
4. 폐업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대행 ····· 15
5.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 완료현황> 전산등록 ·· 15
6. 미접종 취학아동 접종지도 ····· 15

CONTENTS

●제6장 시·도 역할 16

1. 시·군·구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도·감독 ····· 16
2.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16

●제7장 질병관리본부 역할 16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운영 ····· 16

●첨부 Ⅰ 주요 서식 17

[서식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서식 ····· 18
[서식2]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 20
[서식3]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예시 ····· 21
[서식4]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보고 서식 ····· 22

●첨부 Ⅱ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23

●첨부 Ⅲ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26

●첨부 Ⅳ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매뉴얼 29

●첨부 Ⅴ 예방접종 접종 정보 34

[첨부Ⅴ-1] 2017년 표준예방접종일정표 ····· 35
[첨부Ⅴ-2] 각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 ····· 37

제1장 사업 개요

1 배 경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짐

○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만 4세 이후)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2 경 과

○ 취학아동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행('01년~'11년)

※ 2000년~2001년 홍역 대유행 발생 시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취학아동의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여 홍역 예방접종률을 95%이상으로 유지함

○ 관련 법령 정비('00년~'12년)

–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예방접종 기록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한 기반 강화('02년~'12년)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02년)

– 교육부 교육정보시스템(이하 '나이스'라 함)의 학생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의 접종정보 연계('12년)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접종 확대('12년)

– 만 4-6세에 접종 완료하여야 하는 추가접종(4종)으로 확대 실시

※ 2001년 홍역(1종) → 2012년 DTaP, 폴리오, MMR, 일본뇌염(4종)

3 목 적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향상하여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

4 내 용

4.1. 사업 대상

○ 201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 2010.1.1.~12.31. 출생아 및 의무취학 예정자

4.2. 사업 대상 예방접종

○ 만 4~6세 추가접종 4종*

* 추가접종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4.3. 사업 내용

○ 교육부 학생정보와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등학교입학 시 사업 대상 예방접종(4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관리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

– 취학 시 예방접종력이 전산등록 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생략

※ 단,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불가한 경우'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대상

①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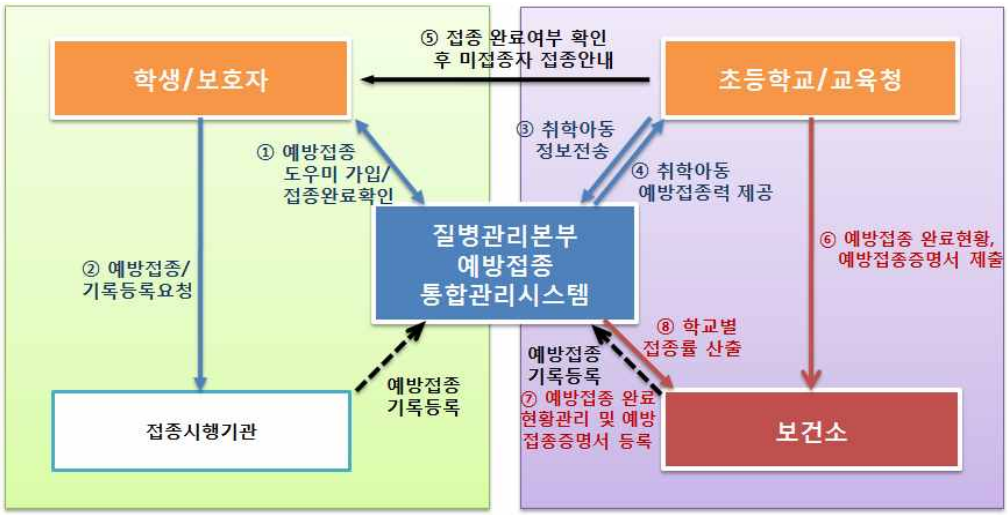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②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③ DTaP 접종지연으로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5 사업체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체계>

(학생/보호자) ① ② 초등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등을 통해 예방접종내역 확인 후 누락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 되지 않은 접종은 접종시행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교육부) ③ '17년도 취학아동의 학생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 전송

(질병관리본부) ④ 취학아동의 학생정보에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부로 전송

(초등학교) ⑤ ⑥ 나이스에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자에게 접종 실시 안내 후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보건소) ⑦ ⑧ 미완료자에게 접종 안내 및 미완료 사유를 등록하고,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전산등록하여 학교별 접종률 산출

6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사업 일정	사 업 내 용
'16. 12월	취학통지서 발급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배부**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방법 안내 → · 미접종자 : 예방접종 실시 및 전산등록 · 전산미등록자 : 접종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17. 2월	**「2017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질병관리본부→시도→보건소) (교육부→교육청→학교)
'17. 4월 초	**취학아동 정보 전송** (교육청 → 질병관리본부)
'17. 4월 초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정보 및 주민등록 오류자 환류**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 학교: 나이스)
'17. 4월 중~	학교장은 취학아동 예방접종 정보 나이스 반영 상태, 학생 정보확인 및 접종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17. 5월 초	**취학아동 정보 및 주민등록 오류자의 기초정보 전송(2차)** (교육청 → 질병관리본부)
'17. 5월 초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정보 전송(2차)**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 학교: 나이스)
'17. 5월 중~	학교장은 NEIS에서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후 **접종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17. 6월 초	학교장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
~'17. 7월 초	보건소는 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등록, 미접종자 관리를 통한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7 법적 근거

○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예방접종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예방접종 기록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6.2.3.>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시행일 : 2017.2.4.] 제1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취학아동 학부모 역할

1 아동의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 확인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

○ 자녀의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있는지 인터넷, 모바일 또는 접종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인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사이트→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 필요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이 아닌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입력한 내역은 학교에서 확인 불가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누락 시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 가능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4종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된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완료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 완료

○ 자녀가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미완료하였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완료여부를 확인

※ 확인사업 대상 접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자녀의 접종이 표준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

■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아동의 경우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

※ 접종이 지연되어 다음차수 접종이 생략된 아동 중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단,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를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가능

제3장 접종기관 역할

1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 예방접종 시행 후 접종내역 전산등록

○ 취학 예정 아동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확인사업 대상 접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 실시

■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아동의 경우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Td 그 외 1차에 등록)

※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산등록을 해주거나, 접종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 금기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제외 대상 백신의 종류 및 사유를 표기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를 발급하여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전산시스템을 통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p.26 참조)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 우측상단 '바로가기' → '증명서발급' → '취학아동 증명서' 발급

· OCS 행정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 [취학아동 증명서] 출력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행정지원→ 자료실→ 각종서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2 전산 미등록된 접종기록 등록

➜ 전산 미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등록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여부를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한 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등록

➜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산 장애 등으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에 대해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를 발급하여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

※ 제출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는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예정임

제4장 초등학교 역할

1 취학아동 학부모에게 홍보

➜ 예비소집 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가정통신문(서식 3, p.21)을 참조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 예방접종 전산등록 완료여부 확인과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완료 하도록 안내

2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나이스를 통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 나이스에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정보는 2회(4월 초, 5월 초) 교육부로 전송됨

○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는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 누락자에게는 전산등록 하도록 안내

➜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작성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백신 4종에 대한 접종별 접종자 및 미접종자 현황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 4, p.22)을 작성

※ 정확한 통계를 위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와 증명서 제출 여부를 구분하여 집계

- **취학아동 수:** 2017년 입학한 전체 학생 수로 백신별 접종자와 접종제외자, 미접종자의 합(계)과 같음
- **4종 백신 접종자 수:**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4종)를 모두 접종한 학생 수
- **접종자>전산등록 확인자>나이스 연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와 연계되어 나이스에서 접종이 확인된 학생 수
- **접종자>전산등록 확인자>기타:** 예방접종내역 연계 이후 접종을 하여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학생 수
- **접종자>전산 미등록자>증명서 제출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예방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고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수.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접종자>전산 미등록자>증명서 미제출자:**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학부모 확인,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내역이 확인은 가능하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학생 수
- **접종 제외자>생략자:** 지연접종으로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의 해당 차수 접종이 생략되는 학생 수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실시되어 다음차수 접종 생략되는 아동, 만 7세 이후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

※ MMR 접종은 생략 없음. 과거 홍역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 MMR 접종 필요

■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5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만 7세가 넘은 경우

-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접종 가능하므로,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

■ 지연접종으로 추가접종이 생략된 경우 나이스에서 확인 방법

- 아동의 '접종구분(최종접종차수)'과 '접종일'을 통해 확인

(예시)

이름	접종명	접종구분	접종일
김○○	폴리오(소아마비)	3차접종	2015.6.11.

· 2010년 출생아인 김OO 아동은 폴리오 3차 접종을 2015.6.11.(만 4세 이후)에 접종하였으므로 폴리오 4차 접종 생략 대상임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확인 방법

- 나이스에서는 Td의 접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DTaP 대신 Td로 접종한 학생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

※ 예방접종 완료현황 작성 시 '미접종>예방접종 제외자>**생략자**'에 해당됨

- **접종 제외자>금기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수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미접종자:** 확인대상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 수

(예시) 최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2차까지만 접종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3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아동, 접종력이 없는 아동 등

- **접종률(%):** 접종자(전산등록 확인자 + 전산 미등록자)/취학아동 수 × 100

➜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보건소로 제출

○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 4)과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제출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미완료자 관리 중 알게된 미접종 사유 관할 보건소에 제출

【 교육부 및 관할교육청의 역할 】

○ ’17년도 취학아동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 전송

○ 질병관리본부의 접종정보가 나이스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 학부모 안내사항 ◈

○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방법)**

– 예방접종 완료여부는 인터넷, 모바일,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이 아닌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입력한 내역은 학교에서 확인 불가

※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시에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회원가입 필요

○ **(미접종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내역 확인

○ **(전산 미등록자)**

–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

–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예방접종 지연자)**

–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음

■ 접종이 지연되어 추가접종이 생략되는 경우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5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만 7세가 넘은 경우

–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접종 가능하므로,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

– DTaP 접종이 지연되어 만 7세 이후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제5장 시·군·구 역할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발부

○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발부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서식 1)를 동봉하여 배포(관인 필히 포함)

2 홍보 및 교육

2.1. 취학아동 학부모에 대한 홍보

○ 반상회보, 소식지,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아동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홍보(p.13 참조)

2.2. 의료기관 및 의사회 홍보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공문 발송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접종기관 역할 수행 안내(p.8 참조)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서식 제공

○ 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업 홍보

2.3. 학교 홍보

○ 보건교사 간담회 개최(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관련 서식 등 제공

3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 취학 예정 아동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함

4 폐업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 전산등록 대행

○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는 취학아동 관할 보건소 또는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내역을 전산등록 함

○ 폐업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의무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폐업 사실 확인 후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 전산등록

5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등록

○ 보건소장은 6월 초까지 관내 초등학교장에게 <예방접종 완료현황>(서식 4)과 예방접종 금기사유 등이 표기된<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를 제출하도록 요청

○ 학교로부터 제출 받은 <예방접종 완료현황>과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6월 말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전산등록하여 학교별 접종률 산출(p.29 참조)

○ 제출받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는 5년간 별도 보관함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등록 전 기존 등록 내역 확인 후 등록 내역 없을 경우 등록

6 미접종 취학아동 접종지도 및 미접종 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미완료자 관리> 기능을 통해 미완료자에게 접종 안내 및 미접종 사유 선택하여 등록(p.31 참조)

※ 미접종자 관리 기능은 취학아동 정보 1차 연계(4월 초) 이후 사용 가능

제6장 시·도 역할

1 시·군·구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도·감독

○ 시·군·구 담당자 교육
○ 시·군·구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모니터링
○ 시·군·구별 예방접종 완료현황을 취합하여 7월 초 질병관리본부에 제출

2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과 사업 협조체계 유지
○ 시·도 교육청과의 사업 협조체계 유지

제7장 질병관리본부 역할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운영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작성 및 배포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교육 및 홍보
○ 교육부의 나이스시스템과 예방접종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및 유지
○ 교육부의 취학아동 정보와 예방접종 정보 연계
○ 취학아동 미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첨부 Ⅰ. 주요서식

[서식 1]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서식

(앞면)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취학아동 성명		취학아동 주민등록번호	-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동기(만 4세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지고,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취학아동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 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4종[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모바일,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하며, 모바일 앱과 '민원24'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내 '자녀 예방접종 관리'→[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확인결과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및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확인방법 등 안내문

1)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 등록]

2) 등록된 자녀의 접종내역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접종내역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전산등록이 필요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앱에서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 되지 않은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4) '예방접종 금기자'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5) 예방접종이 지연 실시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이 지연된 다음의 경우 만 4~6세 추가 접종이 생략되며,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 DTaP 5차 접종 생략
- IPV(폴리오)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 IPV(폴리오)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DTaP 추가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아동이 만 7세 이상일 경우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하며, 이 경우 학교에서 접종 확인이 안되므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역에 상관 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접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및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백신: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서식 2]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서식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주소			

접종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확인
※ 고열,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접종 제외 대상 백신 종류: □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기타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 우측상단 '바로가기' → '증명서발급' → '취학아동 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식 3]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예시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만 4세 이후에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져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취학아동은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확인 예방접종(4종): **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DTaP 4차, 폴리오(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한 경우 다음차수 접종은 생략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모바일,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합니다.

◦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자녀 예방접종 관리'→[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모바일 이용 시에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 [예방접종 증명서] 무료로 발급 후 확인
('민원24'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고, 접종받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이 표기된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예방접종이 지연 실시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DTaP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DTaP 5차 접종 생략
- 폴리오(IPV)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폴리오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만 4~9세 이후 실시된 경우 일본뇌염 4차 접종 생략
-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상 아동은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 후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48~6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초등학교장 ㊞

[서식 4]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보고 서식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학교명:
작성자명:
연락처:
작성일: 년 월 일

학교명	취학아동수	4종 백신 접종자 수[1]	4종 백신 접종 완료율(%)

구분	계[2]	접종자					접종 제외자			미접종자[9]	접종률[10] (%)
		소계	전산등록 확인자		전산 미등록자		소계	생략자[7]	금기자[8]		
			나이스 연계[3]	기타[4]	증명서 제출자[5]	증명서 미제출자[6]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2차)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는 학생

■ 해당되는 모든 학생에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지연접종으로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가 생략된 아동 중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아동, 만 7세 이후 DTaP 대신 Td로 접종한 경우만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1) 4종 백신 접종자수: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모두 접종한 아동수

2) 계(접종자+접종제외자+미접종자) = 취학아동수

3) 전산등록 확인자/나이스 연계: 나이스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접종정보를 제공받아 접종이 확인된 아동

4) 전산등록 확인자/기타: 예방접종내역 연계 이후 접종을 하여 전산등록은 되었으나 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아동

5) 전산 미등록자/증명서 제출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예방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고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아동.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6) 전산 미등록자/증명서 미제출자: 가정통신 등을 활용한 학무모 확인,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접종내역이 확인은 가능하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아동

7) 접종 제외자/생략자: 지연접종으로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의 해당 차수 접종이 생략되거나, 7세 이상으로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아동

※ 지연접종으로 추가접종 생략: DTaP 4차, 폴리오(IPV)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 실시된 경우

- 지연된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사백신 3차 전산등록 내역이 있을 경우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만 7세 이후 DTaP 백신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증명서 제출

※ MMR은 생략 없음. 과거 홍역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풍진, 유행선이하선염 예방을 위해 MMR 접종 필요

8) 접종 제외자/금기자: 심한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적힌<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아동

9) 미접종자: 확인대상 백신을 완료하지 못한 아동(예: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2차까지만 완료한 아동, 접종력이 없는 아동)

10) 접종률 = $\frac{\text{접종자(전산등록 확인자 + 전산 미등록자)}}{\text{취학아동수}}$ X 100

첨부 Ⅱ.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Q1. 2017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A1. 학교에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① DTaP 5차 ② 폴리오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을 완료하고,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입학 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방법]

Q2. 우리 아이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s://nip.cdc.go.kr)에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자녀의 전산등록 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접종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이때,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Q3. 이미 접종을 완료하여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직접 입력한 사항은 전산등록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 제출대상]

Q4.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든 입학생들이 제출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자녀의 만 4~6세 추가 접종 4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되면 별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예방접종 금기자'나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 4~6세 추가 접종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추가 접종 생략 대상자]

Q5. 어떤 경우 만 4~6세 추가 접종을 생략하나요?

A5.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접종**한 경우, **다음 차수인 DTaP 5차, 폴리오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추가 접종 생략 대상자 제출 서류]

Q6. 예방접종 지연으로 만 4~6세 추가 접종을 생략하는 경우, 입학 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A6. 예방접종 지연으로 만 4~6세 추가 접종을 생략하는 아동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전 차수 접종**(만 4세 이후 접종한 DTaP 4차, 폴리오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전 차수 접종이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접종 제외 대상 백신 종류 및 사유가 표기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홍역에 걸린 적이 있는 경우]

Q7. 과거에 홍역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MMR 접종은 안해도 되나요?

A7. 접종해야 합니다. MMR 예방접종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을 동시에 예방하는 백신으로 홍역을 앓았더라도 유행성이하선염과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MMR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접종기관이 폐업 한 경우]

Q8. 아기수첩에는 접종내역이 있는데 전산등록은 되어있지 않고 접종시행기관은 폐업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폐업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하여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대상 접종(4종)에 한해서,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전산등록이 가능합니다.

[DTaP-IPV 콤보백신 접종]

Q9. 만 4~6세에 받아야 할 접종을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9.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콤보)로 추가 접종을 받았다면 DTaP 5차, 폴리오(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학교에서도 확인됩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상 아동]

Q10.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접종 가능하므로,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아동이 만 7세가 넘었다면 DTaP 접종이 아닌 Td 백신으로 접종하여야 하며,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학교에서는 Td의 접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11.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종기록의 전산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1.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받은 후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Ⅲ.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전산 발급 방법 (의료기관, 보건소)

■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 예방접종 등록' →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③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증명서발급' → '취학아동 증명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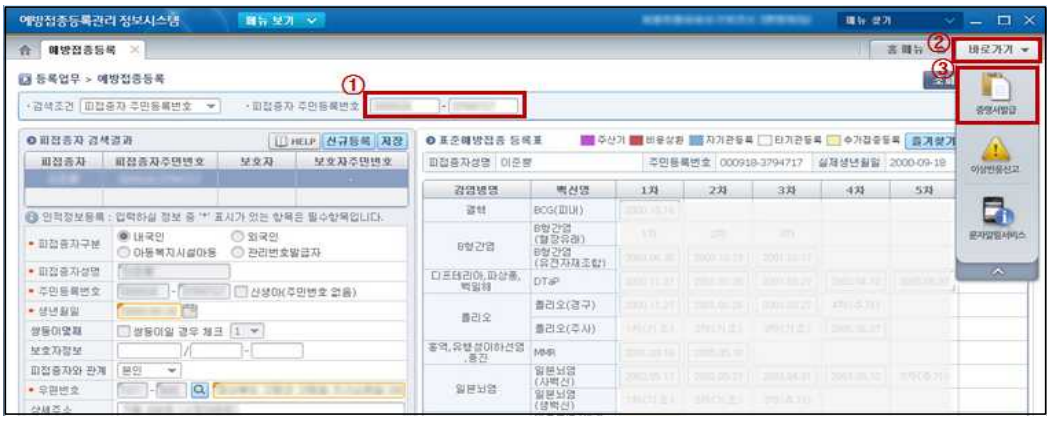
④ 입학 초등학교명을 기입하고, 접종 제외 대상 백신 종류 기입, 해당 제외 사유 선택 후 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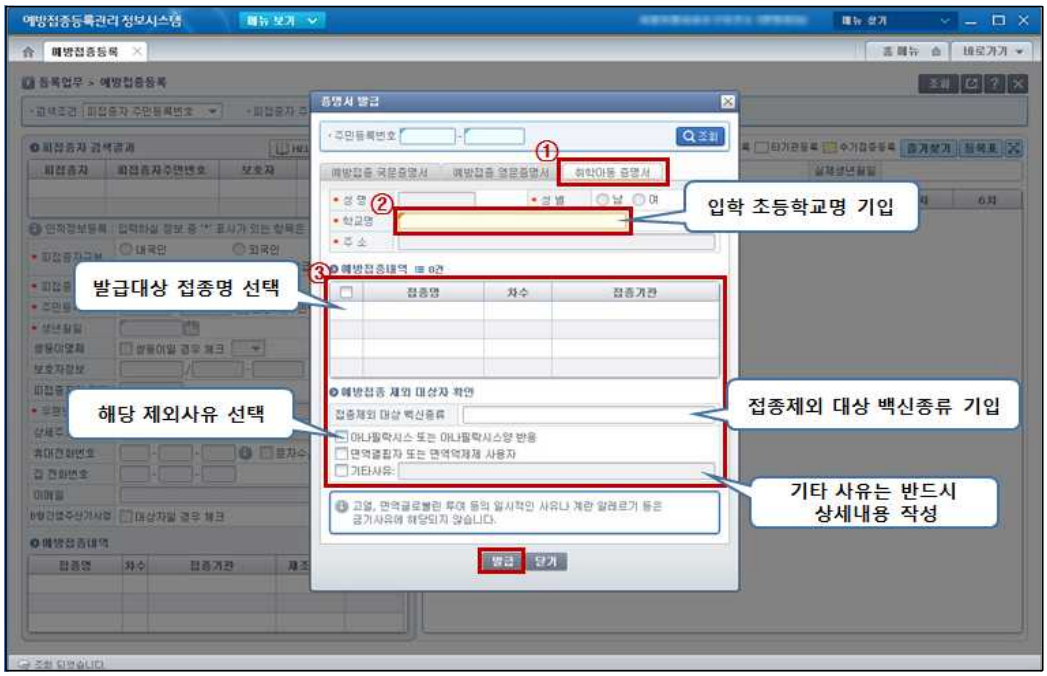
※ <u>기타사유 선택 시, 반드시 상세내용 기입</u>

⑤ 출력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에 발급 의료기관의 직인 날인









2) 의료기관 OCS를 이용한 방법

① OCS 행정서식 → 예방접종 증명서 → 취학아동 증명서

② 입학 초등학교명을 기입하고, 접종제외 대상 백신 종류 기입, 해당 제외 사유 선택 후 증명서 발급

※ **기타사유 선택 시, 반드시 상세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③ 출력된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에 발급 의료기관의 직인 날인



첨부 Ⅳ.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매뉴얼

■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시스템 사용 방법

1)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및 결과보고

①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를 참고하여 학교별 접종현황 파악

② 미완료자 관리메뉴를 활용하여 접종독려 및 미완료 사유 입력

③ 학교에서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등록

④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접종관리'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에 학교에서 제출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입력 후 엑셀 다운로드하여 시도에 결과 제출

※ 학교로부터 결과제출 받을 시 상단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에 있는 데이터 참고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내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접종관리' 메뉴 설명

① 학교별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전산등록 내역을 토대로 예방접종 완료현황 자동생성

※ 주 1회(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 **학교로부터 예방접종 완료현황 결과제출 받을 시 참고**

※ 학교에서 제출받은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가장 하단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에 입력

※ 주민등록번호 오류 또는 학적 미구성(전학생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학생의 접종정보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제출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② 미완료자 관리

– 학교별 미완료자 명단 클릭 시 미완료 상세내역(살구색) 확인 가능

※ 주 1회(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 미완료 사유 '등록' 버튼 클릭하여 미완료 사유 입력

– 우측 상단 '미완료자 문자관리' 클릭 시 대상자관리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미완료자에게 문자 발송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학생의 경우 조회 안 될 수 있음

– 우측 상단 '증명서등록' 버튼 클릭 후 학교에서 제출한 증명서 등록 가능



③ 생략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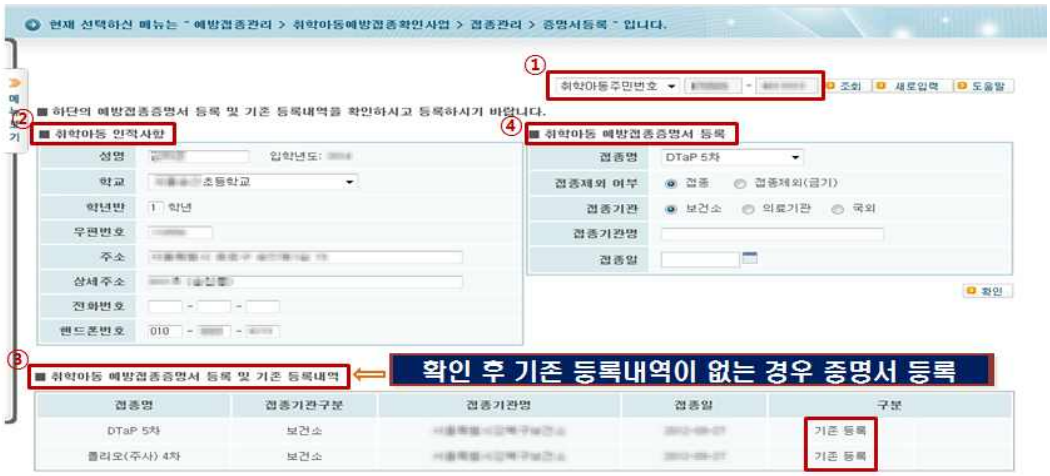
– 학교별 생략자 명단 클릭 시 접종 상세내역(레몬색) 확인 가능

※ 주 1회(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④ 증명서 등록

– 하단 '기존 등록내역' 확인 후 기존 등록내역이 없는 경우 증명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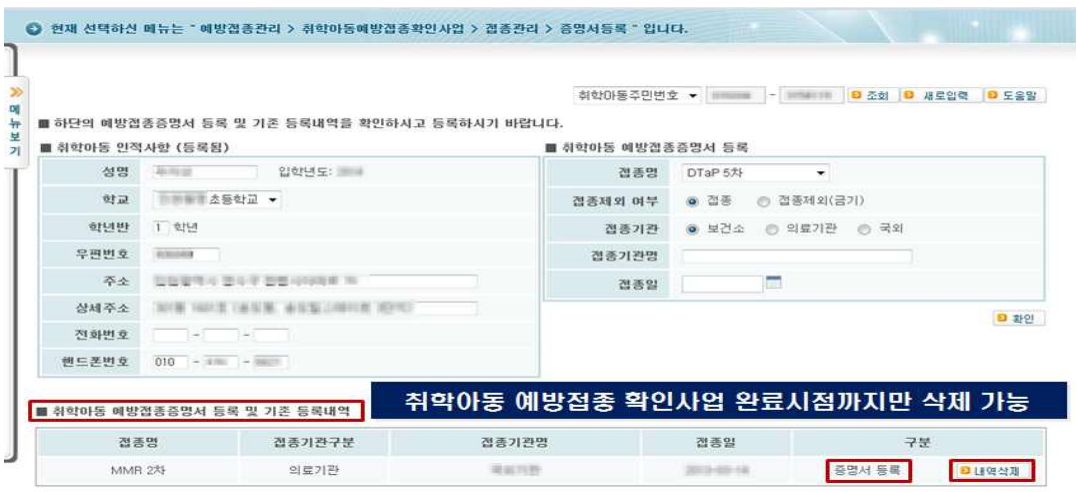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접종제외 여부에 '접종제외(금기)' 선택 후 제외사유 등록

※ 예방접종 지연으로 해당접종이 생략된 아동이나, 만 7세 이상으로 DTaP 대신 Td로 접종한 아동은 등록하지 않음



– 등록한 예방접종증명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내역삭제' 후 재등록

※단,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완료시점까지만 삭제 가능



⑤ 증명서 및 미완료사유 등록 현황 관리

– 보건소가 등록한 증명서, 미완료 사유 등록현황 확인 가능



⑥ 예방접종 완료현황 관리

– 학교명 클릭하여 활성화된 팝업창에 **학교에서 제출한 '취학아동 예방접종 완료현황' 입력**

※ 각 접종의 계와 취학아동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저장 불가



– 예방접종 완료현황 등록 후 엑셀 다운로드하여 시도에 결과 제출



첨부 Ⅴ. 예방접종 정보

[첨부 Ⅴ-1] 2017년 표준예방접종일정표



① **BCG**: 생후 4주 이내 접종

② **B형간염**: 임신부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의 B형간염 접종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③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④ **Td / Tdap**: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으로 추가접종

⑤ **폴리오**: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생후 2, 4, 6개월, 만4~6세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접종가능

⑥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접종

⑦ **폐렴구균(단백결합)**: 10가와 13가 단백결합 백신 간에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⑧ **폐렴구균(다당질)**: 2세 이상의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소아: 만성 심장 질환, 만성 폐 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⑨ **홍역**: 유행 시 생후 6~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 백신 재접종 필요

⑩ **A형간염**: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6~18개월 후 추가접종(제조사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름)

⑪ **일본뇌염(사백신)**: 1차 접종 후 7~30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⑫ **일본뇌염(생백신)**: 1차 접종 후 12개월 후 2차 접종

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만 12세에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2가와 4가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⑭ **인플루엔자(사백신)**: 6~59개월 소아의 경우 매년 접종 실시. 이 경우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⑮ **인플루엔자(생백신)**: 24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며, 접종 첫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첨부 Ⅴ-2] 각 백신의 최소 접종 간격[1]

질병	백신	접종 권장시기	최소 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 간격
B형간염	B형간염(1차)	출생시	출생시	1개월	4주
	B형간염(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B형간염(3차)[2]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DTaP(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DTaP(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DTaP(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3]
	DTaP(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DTaP(5차)	만 4~6세	만 4세	–	–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만 11~12세	만 7세	10년	5년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ap	만 11세 이상	만 11세	–	–
폴리오(불활성화 백신)	IPV(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IPV(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IPV(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IPV(4차)	만 4~6세	만 4세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백신)	Hib(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Hib(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Hib(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Hib(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단백결합(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단백결합(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단백결합(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단백결합(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23가 다당(1차)	–	만 2세	5년[4]	5년
	23가 다당(2차)	–	만 7세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1차)	생후 12~15개월[5]	생후 12개월	3~5년	4주
	MMR(2차)	만 4~6세	생후 13개월	–	–
수두[6]	Varicella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6]	4주[6]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7~30일	7일
	불활성화 백신(2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6개월
	불활성화 백신(3차)	생후 24~35개월	생후 18개월	3~4년	2년
	불활성화 백신(4차)	만 6세	만 5세	6년	5년
	불활성화 백신(5차)	만 12세	만 11세	–	–
	약독화 생백신(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12개월	1개월
	약독화 생백신(2차)	생후 24~35개월	생후 24개월	–	–
A형간염	A형간염(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A형간염(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7]	HPV(1차)	만 11~12세	만 9세	2개월	4주
	HPV(2차)	만 11~12세(+2개월)	만 9세(+4주)	4개월	12주
	HPV(3차)	만 11~12세(+6개월)	만 9세(+24주)	–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8]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약독화 생백신	생후 24개월~49세	생후 24개월	1개월	4주
로타바이러스[9]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1)혼합 백신(combination vaccines)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 백신 사용이 각 성분의 개별 접종보다 선호된다(CDC. Combination vaccinces for childhood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MMWR Recomm Rep. 1999;48(RR-5):1-15). 혼합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연령은 각 성분 백신 투여 최소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이다. 혼합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접종간격은 각 성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큰 값이다.

2)B형간염 백신 3차 접종은 2차 접종 8주 이후에, 1차 접종 16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또한 3차 접종은 생후 24주 이전에 해서는 안된다.

3)DTaP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DTaP 3차 접종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하였으면, 4차 접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4)23가 다당 백신 2차 접종은 중증 폐렴구균 감염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항체 역가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5)홍역 유행이 있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하는 백신은 표준 접종일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CDC. Measles, mumps, and rubella-vaccine use and strategies for elimination of measles, rubella, and congenital rubella syndrome and control of mumps: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WR Recomm Rep. 1998;47(RR-8):1-57).

6)12개월~13세 미만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13세 이상인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7)HPV 4가 백신은 9~26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가 되어 있고 HPV 2가 백신은 9~25세의 여성에게 허가가 되어 있다. 3차 접종의 최소 연령은 초회 접종의 최소 연령에 따라 다르며 1차 접종 및 3차 접종간의 최소 접종간격은 24주이다. 초회 접종 이후 최소 16주가 지나서 접종할 시에는 3차 접종은 반복할 필요 없다. 4가 백신은 9~13세 소아, 2가 백신은 9~14세의 소아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8)9세 미만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해에는 최소한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9세 소아들도 유행주에 따라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고한다.

9)로타바이러스의 초회 접종은 생후 6주에서 14주 6일까지 투여 되어야만 한다. 생후 15주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8개월 이상의 영아에게 투여되어서도 안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자료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Hamborsky J, Kroger A, Wolfe S, eds. 13th ed. Washington D.C. Public Health Foundation, 2015]

2017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인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편 집 인 감염병관리센터장 곽숙영
편집참여인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김미영, 박광숙, 박은영
편 집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관리과
주 소 (363-951) 충북 청주시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전 화 043) 719-6848~52
팩 스 043) 719-6859

이 책은 질병관리본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